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079
----------	-------

발의연월일 : 2023. 12. 26.

발 의 자 : 박성민 · 이명수 · 서일준
이현승 · 정동만 · 정경희
전봉민 · 서정숙 · 구자근
강민국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며, 지역경제 또는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교부된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결산서 제출 시 경영성과 및 출자한 법인의 관리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며, 출자·출연 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7조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출자·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경영성과, 출자한 법인의 관리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라. 출자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마. 출자·출연 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함(안 제22조의2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또는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교부된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향후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에 따라 정한다.

1. 출자·출연기관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출자·출연한 지방자치단체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출자·출연의 방법

7. 그 밖에 출자·출연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동으로 설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지정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정 해제

제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의 타당성 등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을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

1. 출자·출연기관(제3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도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경영성과, 제22조의2에 따라 출자한 법인의 관리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사채 발행이나 자금 차입의 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4절에 제22조의2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출자·출연 기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출자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출자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는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또는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출자·출연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향후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3. 설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를 회수하거나 향후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출자·출연 기관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대상 등) ①·② (생략)	제2조(적용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 ----- ----- ----- ----- ----- 제22조제1항·제2항-----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생략)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거

<신 설>

<신 설>

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가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
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
에 따라 정한다.

1. 출자·출연기관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출자·출연한 지방자치단체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출자·출연의 방법

7. 그 밖에 출자·출연에 필요
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은 출자·
출연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동으로 설립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

⑤ 제1항 및 제2항-----

-----.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

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략)

<신설>

3. ~ 7. (생략)

② ~ ⑤ (생략)

-----.

-----.

1.·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지정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정 해제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의 타당성 등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후단 삭제>

1. 출자·출연기관(제3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하려는 경우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
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
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
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
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
른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
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제4조제6항-----

-----.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결산) (생략) <신설> 제22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 -----. 1. 2.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는----- ----- ----- -----. ⑤ 출자·출연 기관----- ----- ----- -----. 제19조(결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경영성과, 제22조의2에 따라 출자한 법인의 관리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	---

① 출자기관은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생략)

<신 설>

① -----

-----.

-----사채 발행이나 자금 차입의 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2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출자·출연 기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출자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

<신 설>

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는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또는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출자·출연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부된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향후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3. 설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9조에 따른 결산서의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3. (생략) ② (생략)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를 회수하거나 향후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출자·출연기관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u>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①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1항-----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